

경운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장 제1절 제3관에 의거하여 경운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위촉한다.

1.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2. 위원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한다.
3.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부총장 및 실·처장의 보직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6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